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75
----------	-------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김용판 · 하영제 · 백종현
김영식 · 박대수 · 전봉민
박성민 · 임이자 · 이주환
최춘식 · 권명호 · 박덕흠
김성원 · 강대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개표사무원은 투·개표소 일선에서 투·개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개표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9항 및 제174조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로 한다.

제174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생 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 사무원을 <u>위촉하여야 한다.</u>	⑨ ----- ----- ----- ----- ----- 위촉하 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은 투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
⑩ · ⑪ (생 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174조(개표사무원) ① (생 략)	제174조(개표사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u>위촉한다.</u>	② ----- ----- ----- ----- 위촉하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